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행 | 안전관리과-3943 (2014.9.18.) |
| 접수 | 토목부-18027 (2014.9.18.) |
| 보존기간 | 년 |
| 결재일자 | 2014.9.18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| 수신자 | 토목부장 |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주무관 | 안전관리과장 | | |
| 이상훈 | 09/18 박상태 | | |
| 협조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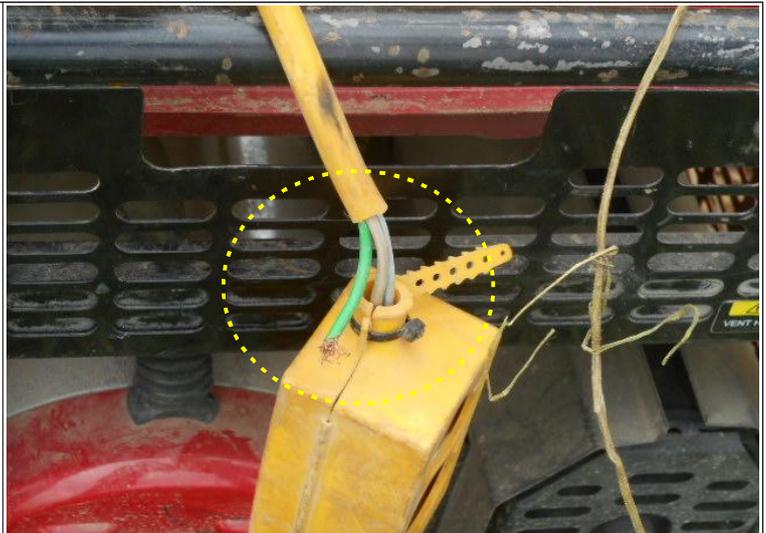
건설공사장 기동불시 특별점검 결과보고 [고척교 돛야구장주변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고척교 확장공사]

- 점검일시 : 2014. 9. 17(수)
- 점검결과
 - ◆ 점검자 : 안전관리과 이상훈(건설안전분야)

○ 감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(현장시정사항)

- 목동방향 보행광장 구간에 현재 사용중이지 않는 발전기의 연결 케이블 전선의 접지선이 탈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용시 교체하여 사용요함.
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P32



○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(현장시정사항)

- 돛야구장측 작업구간에 설치된 위험물 저장소는 용도 외(자재보관등)로 사용중이므로 자재는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요함.
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43

(위험물 보관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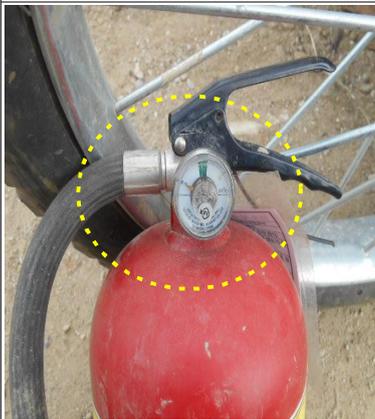


○ 화재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(현장시정사항)

- 경사로2 P2에 놓인 LPG 가스의 연결호스가 마모되어 가스누출이 되고 있으므로 교체요함.
- 소화기는 가스를 충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화재사고에 대비요함.


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P46



○ 낙하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(현장시정사항)

- 경사로2 P2에 적재된 톤마대는 규격품(제작회사, 허용하중 미표시)이 아닌 제품에 폐자재등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허용하중이 표시된 규격품을 사용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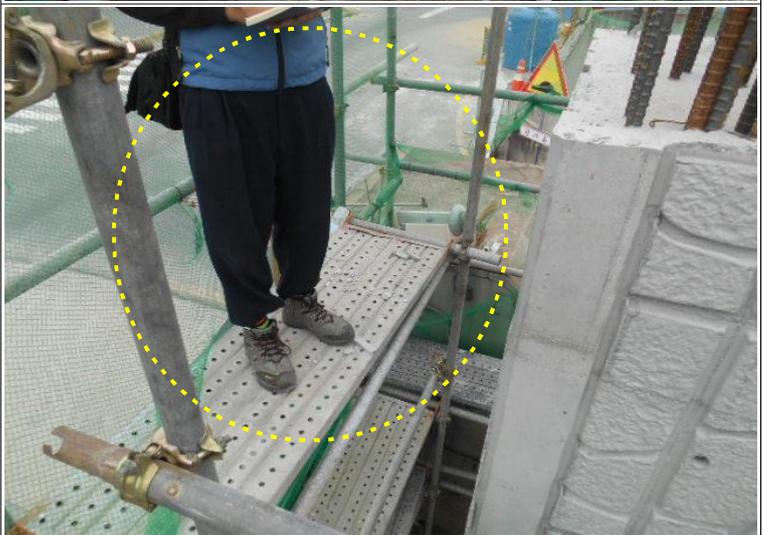

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P88

○ 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
(현장시정사항)

- 광명방향 보행광장 측에 설치된 비계의 승강통로상의 작업발판의 틈이 넓어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조치요함.
- 광명방향 보행광장 측에 설치된 벽체 콘크리트 타설이후 해체예정인 비계의 측면에 안전난간이 일부구간 없으므로 추락재해 예방에 위해 해체전까지 안전난간 설치요함.

※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)



○ 낙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(현장시정사항)

- 광명방향 가설비계 작업발판 및 계단통로 상부에 중량물 적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
- 철근 다발(490kg) 적치로 비계기둥간 허용적재하중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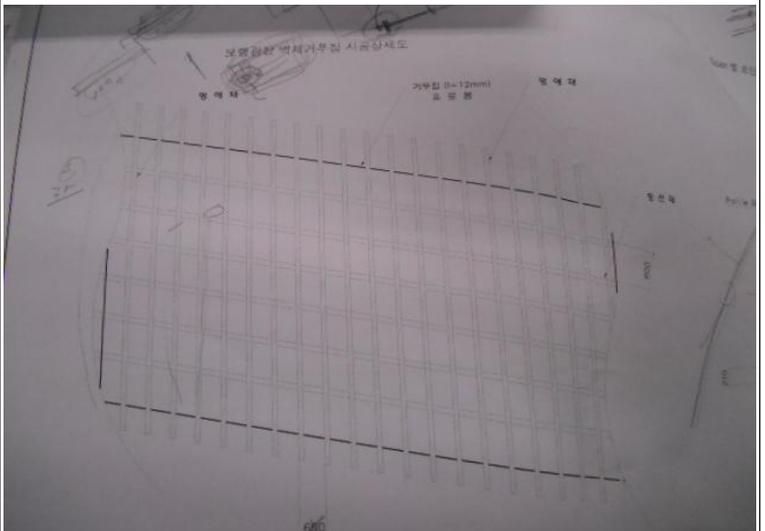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거푸집동바리붕괴 예방 사항
(검토사항)

- 목동방향 #3~#1 Span 1단 벽체 거푸집 동바리 경사지지대 고정 불량으로 조치요함
- 경사지지대 하단 지지점 및 상단 지지점 고정이 불량하니 배면 슈트 파일에 수평지지토록 개선요함
- 설계도면상에는 자립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보강조치한 사항
-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설계도면상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강조치하고 보강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조치할 것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(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에 관한 사항
(검토사항)

- 경사로 P2 코핑 강재 거푸집 승강 계단 및 승강수직 사다리 동일 연직 방향에 설치되어 추락위험 있으므로 상부 수직사다리와 하부 승강계단을 평면위치에서 겹치지 않도록 위치 변경요함
-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지그재그로 배치함이 타당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에 관한 사항
(현장시정사항)

- 광명방향 가설비계의 경사로에 미끄럼막이 없으므로 작업자 전도 방지를 위해 조치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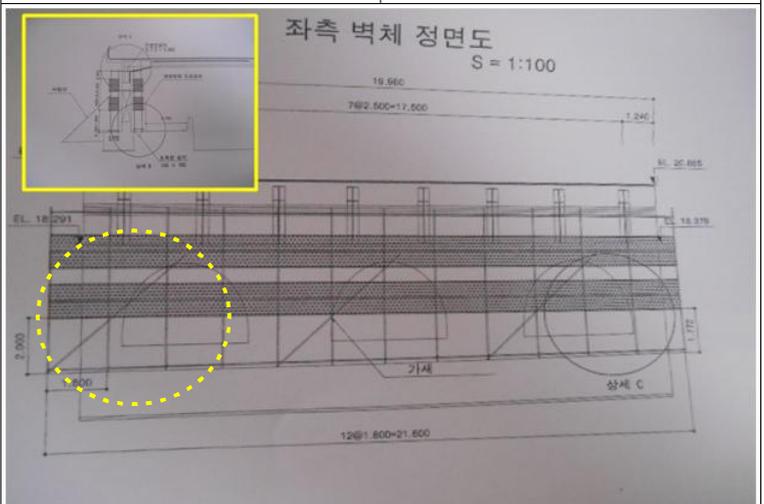


○ 강관비계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(현장시정사항)

- 광명방향 가설비계의 접속부 연결불량으로 전용철물로 견고히 결속요함
- 작업발판 파손으로 교체요함
- 비계기둥의 종방향 및 횡방향 밀동잡이 미설치로 설치요함.
- 버팀대의 하부 지지불량으로 재설치요함.
- 버팀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요함
- 가설비계의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설치요함.
- 가설비계 도면작성이 상세히 작성되어 있지않으므로 현장에 적합한 설계도면을 보완하여 작성요함.
- 가새설치시 전체시스템을 고려하여 양방향으로 가새설치요함.

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(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) 및 제60조(강관비계의 구조)



○ 거푸집동바리 붕괴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(검토사항)

- 경사로4 P1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하였으나 설계도면에는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고 자립토록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강조치하였으나 자립을 위한 벽이음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버팀대를 철근다발등에 불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

- 향후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자립은 비계 벽이음을 철저히 시행하고,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교하게 보강조치후 타설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(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) 제334조(콘크리트의 타설작업)



□ 조치사항 :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·후 사진을 첨부하여 부서장 보고 후 2014. 10.1(수)까지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